##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장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504 발의연월일: 2025. 4. 1.

발 의 자:신장식·김선민·김재원

황운하 · 김준형 · 백선희

강경숙・정춘생・차규근

서왕진 · 이해민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고,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함. 또한,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도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함. 즉, 권한쟁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한 경우 피청구인에게는 처분의 의무가 발생함.

그런데 현행법에는 새로운 처분을 할 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, 이행 기간 및 미이행시의 처벌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처분이 뒤따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하고, 미이행할 경우

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헌법적 질서를 바로잡고자함(안 제36조제2항제6호, 제66조제3항 및 제4항, 제75조제9항 및 제78조의2 신설).

##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제66조제3항 또는 제75조제9항에 따른 처분기간 제6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③ 헌법재판소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때에는 피청구인이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지체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기간을 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
  - ④ 헌법재판소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을 결정하기 전에 피청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75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제4항의 경우에 제6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제6장에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8조의2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.
  - 1. 제66조제3항의 기간 내에 같은 조 제2항의 결정 취지에 따른 처 분을 하지 아니한 자
  - 2. 제75조제9항의 기간 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새로운 처분을

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(종국결정) ① (생 략)	제36조(종국결정) ① (현행과 같
	<u></u> 아
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	②
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	
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	
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	
야 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<u>6. 제66조제3항 또는 제75조제9</u>
	<u>항에 따른 처분기간</u>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66조(결정의 내용) ①・② (생	제66조(결정의 내용) ①·② (현
략)	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③ 헌법재판소는 부작위에 대
	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때에
	는 피청구인이 결정취지에 따
	른 처분을 지체 없이 이행할
	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인정되
	는 최소한의 기간을 결정서에
	기재하여야 한다.
<u> &lt;신 설&gt;</u>	④ 헌법재판소는 제3항에 따른
	기간을 결정하기 전에 피청구
	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제75조(인용결정) ① ~ ⑧ (생	제75조(인용결정) ① ~ ⑧ (현행

략)	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⑨ 제4항의 경우에 제66조제3
	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제78조의2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
	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
	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
	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.
	<u>1. 제66조제3항의 기간 내에 같</u>
	은 조 제2항의 결정 취지에
	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자
	2. 제75조제9항의 기간 내에 같
	은 조 제4항에 따른 새로운
	처분을 하지 아니한 자